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건립 중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공공체육시설로, 해당시설에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

나 동일 시설 내 주차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분리 운영 될 경우 이용 시민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시립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는 데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체육시설과 주차장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